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4조제6항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작성방법 등) ① ~ ⑤ (생략)</p> <p>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u>행정안전부</u>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p>	<p>제4조(작성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행정자치부</u>----- ----- -----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 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연락 처	(033)330-2206

관계 법령

□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 ② ~ ③ 생략